

「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년 11월 16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3년 11월 27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9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3년 12월 6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산림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「산림보호법」 제33조 제3항에 따라 산불방지를 위하여 활동하는 개인·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을 위한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산불방지를 위한 지원 근거 규정 구체화(안 제5조)
 - 산불 예방 등의 활동을 하는 개인·단체에게 필요한 비용·물품 지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※ 검토보고서 전문 [붙임 1]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생략」

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

- 붙임 1.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.
2.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